

<일반 시방>

제7조 : 제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실시 상황 및 실시 공정도를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월별 등 정해진 주기 또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도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공정의 지연이 발생시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다음 사항을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공사진척 사항 및 시공계획(소정 양식의 사진첩 포함)
 - 2) 노무자의 출력사항
 - 3) 중기 및 장비 동원 사항
 - 4) 노임 지불사항
 - 5) 공사용 자재의 수불 사항
 - 6) 풍수해에 대한 방지책
 - 7)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5. 월간진도보고서
 - 1) 계약상대자는 **익월 10일까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월간진도보고서를 15부 제출하여야** 한다.
 - 2) 월간진도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수록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정
 - (2) 문서 수발상황
 - (3) 기술인원 현황
 - (4) 일별 투입 인원현황
 - (5)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지시서, 구매주문서 또는 공급계약서 발행 또는 체결현황
 - (6)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수송 및 상태
 - (7) 건설공정상 하이라이트 및 계류사항
 - (8)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도면 목록 및 승인현황
 - (9) 월간개요
 - (10) 건설공정을 지시하는 사진
 - (11) 기타 참고 사항
6.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콘크리트에 관한 제반 시험(기술사항 참조)
 - (2) 골재 및 석재에 관한 시험(기술사항 참조)

(3) 지반의 지내력 시험(기술사항 참조)

제29조 : 공사용 가설 건물

1. 공사에 필요한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실, 자재보관 창고, 시멘트 보관창고, 숙소, 화약고, 콘크리트 시험실, 작업허간 등의 가설물은 건물의 규모와 위치 등을 상세히 기술한 **가설물 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관계법규에 정 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공사완료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기초까지 완전 철거하여 설치 위치의 지형에 맞게 원상복구 한다.
2. **공사용 전력 가설물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하여 시공한다.**
3. 공사용 전력, 설비운용(유지보수 및 관리)은 계약상대자가 하며 한전 전기공급 규정상 규제 되는 기준역율 미달로 발생하는 가산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36조 : 공사관리(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독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업자 소속직원으로서 당해공사의 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따라 수행하는 지를 감독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공사 수행을 감독할 때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계약상대자의 업무는 관련법령 및 국토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 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및 제4장의 업무범위와 의무 등에 따라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8조 : 안 전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4조, 제15조의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8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로부터 현장 시공의 일부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있는 경우 마찬가지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종합하여 개선할 사항 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위험성 평가 내용에 대한 보 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2.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 모자를 써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안경을 써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진단을 필하여야 하며, 동 안전진단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수행과 관련되는 제반 보안관리 업무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5. 화약 등 폭발 위험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폭발물 취급 인가자만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 하에 취급할 수 있다.

(3) 안전설비 설치방법

- 공사구역의 표시

현장은 안전책으로 둘러져야 하며 야간 공사시에는 3.5M 간격으로 경보등을 켜야 한다.

- 공사표지판은 교통로에 면하여 공사장 끝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사내용 책임자, 접근 방법 등을 표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우회표시 및 야광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 통행인 및 차량유도

통행인 및 차량유도를 위해 필요시 안전책, 경보등 COLOR, CONE, 직진표지판, 표지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맹인 유도

맹인용 신호가 현장 양측에 설치되어야 한다.

19.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설비(발전기 등)는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전달받은 설계 안전성 검토 결과를 포함시켜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서를 변경(공법변경 등이 아닌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1)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 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방법과 시공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 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 받았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공사규모 이하의 경우에도 관련 안전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토록 하여야 한다.

23.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에 대해 착공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고,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정하는 공사규모 이하에서 선임 및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발주자가 책정한 초급기술자의 노임 단가 수준으로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이때, 활동실적이 계획일수를 초과할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 초과 집행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의 스마트 카메라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품질검사를 요구하여 합격한 장비에 한해 투입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 영상촬영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기준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착공전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상대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준수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방문 내지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매분기별(연간 4회) 점검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6. 발주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4조부터 제10조에 따라 발주자로서 다음과 같이 본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발주 및 착공이전 단계

(1)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정보완 지시

(2) 안전관리비 계상

2) 공사시행 단계

(1)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관리

(3)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집행실태의 확인

(4) 상기 내용의 확인을 위한 회의의 정기적 개최

3) 공사완료 단계

(1) 건설공사 준공시 계약상대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설계도서로 보관

(2) 건설공사 준공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국토교통부 장관(공단)에 제출

제41조 : 환경보전비 등 정산 기준

1.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후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단, 공사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금액이 계상된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사전에 초과 집행사유 및 금

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 적정 항목으로 반영 하여 정산 처리할 수 있다.

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 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확인. 승인 후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4.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 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5.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6.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8. 시공감리수수료는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에 의거 동 비용의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후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9. 공사수행 부지 임대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면적 범위내에서 정산한다.(단,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함)

10. 기타경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경비의 세비목 중 수도광열비, 복리 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6개 항목(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기타 간접공사경비)을 별도 1식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적에 따라 정산하지 아니하되, 공사이행 기간의 변경 등이 발생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 73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하는 규격의 착공전 변경, 중요 부분 시공광경, 매설물 설치광경, 매물부의 전경 및 공사 준공 사진첩 등 3부를 제작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공사 수행중 보안에 유의하고 공사 준공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제반 도면 및 자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9. 비파괴검사 비용 환수기준 : 비파괴검사 결과 재검사 비율이 각 기성고 산정기간 동안 5% 초과시(필름매수기준), 초과분에 대한 비파괴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일반시방 끝)

<토목 특기 시방>

1 설계도서 관리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으며, 공사의 특성 및 설계의 진행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 1 공사용 도면
- 2 구조계산서
- 3 용지조서
- 4 측량성과품 일체
- 5 인·허가 도서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인수받은 즉시 **도서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3 보안이 필요한 설계도서와 문서 등은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의무

주요역무는 다음과 같다.

- 1 가스공급설비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설계, 제작, 구매, 설치, 운반, 품질관리, 품질보증, 시험, 시운전, 성능시험 및 성능보증
- 2 계약상대자 공급 자재에 대한 공장시험 성적서 및 증명서 제출
- 3 발주자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 업무
- 4 안전관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 5 공사현장의 경비
- 6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에 필요한 잡자재 및 소모성 자재공급
- 7 건설공사를 위한 대관 인·허가 업무 및 민원업무 협조
- 8 배관 및 공급설비 기 시공물에 대한 설비 인수 전까지 보존, 관리
- 9 측량기준점 관리 및 건설공사를 위한 시공측량
- 10 준공도서 작성용 자료 제출.

1 설계변경

1 현장여건에 따라 야간공사가 불가피한 구간은 야간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

2 주배관 매설용 및 공급관리소용 아스콘, 레미콘, 모래, 쇄석 및 보조기층 등의 혼합골재 등은 기준 현장도착도 단가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3 관리소 및 주배관 매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설계도서의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도로포장 두께 등 현장여건 변동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 수량을 정산할 수 있다.

4 세미실드의 전력사용은 수전을 원칙으로 하며, 수전이 불가한 지역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고 발전기를 사용한다. 수전 시 수전비용은 정산분에 반영한다.

5 세미실드 공법의 적용은 안전 및 환경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특수구간(하천, 해저 및 연약지반 등)에 한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추진공법 및 규격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하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6 주배관 공사 지역 및 기타 특수공법(압입, 세미실드 적용 구간 등)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질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며, 현장 시행하는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실적 정산할 수 있다.

7 인허가, 민원 등 계약대상자의 책임없는 사유 및 기타 현장여건의 변경에 따라 발주자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주배관공사 설계변경

1 허가기관이 요구하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도로포장(포장두께 및 덧씌우기 등)은 실적 정산하며 포장층의 변경시 재료에 대한 수량변경의 경우도 실적정산 한다.(콘크리트 포장도 동일 적용)

2 허가기관의 조건과 현장여건의 변동(민원, 도로횡단개소의 증가, 관리소 인입배관연장의 증가, 기타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 등에 따라 주배관연장과 포장 덧씌우기 수량이 증감된 경우 실적 정산한다.

3 주배관 공사 중 발생토사의 잔토처리 및 가적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단, 특수구간(세미셴드 및 셴드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4 공종별 물량산출을 위한 표준굴착단면도의 TYPE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되, 표준굴착 심도 및 굴착 구배조정은 불가하며 TYPE 변경에 따른 물량산출은 당 공사가 작성한 수량산출서 등을 확인 한 후 확인된 방식대로 산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종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 단, 암괴 및 호박돌 구간은 실측에 의한 토적표 작성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5 도로굴착부의 복구는 원인제공자가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조건상 관할청이 복구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관할청에 해당 복구비를 납부하고 설계 변경한다.

6 하천구간은 개착식 공법에 의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제외지를 포함한 하폭이 100m 이상인 하천에 대해서는 당초 하천횡단공법의 변경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지하장애물은 발생 개소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 하에 실적정산하며, 준공도면상의 지하장애물을 명시한 개소와 일치해야 한다.

8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관로의 채움재를 변경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9 압입추진 구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실적정산 한다.

10 주배관 경과지에 대한 농경지 일시보상, 농작물 보상은 감정가 및 발주자가 정한 요율에 따라 정산한다.

11 사유지 경계확인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승인한 구간에 한해 지적경계 복원측량을 시행하고 정산분으로 설계변경 한다.

12 기계압입 및 세미셴드 공사의 설계변경은 발주처의 지시 또는 사전 승인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토질별 굴진시간(hr/m) 적용은 발주처의 『장거리 주배관 터널공법 설계기준』을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일시보상과 농작물 보상을 위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건설공정과 일치하는 보상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구역의 면 단위로 현지거주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토지 일시보상, 농작물 보상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1.1.1.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준공도면 작성을 위한 DATA를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GIS측량성과를 반영**하여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준공도면 작성기준”에 의거, 준공도면 원도 전산파일 및 출력본(A3)을 작성한 후 공사시공부서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1.1.1.2. 준공도면 원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시공용 도면상에 시공 시 변경사항을 적색으로 표시하여 준공도면 원도를 작성하며, 또한 발주자가 제공한 시공도면 전산파일(CAD FILE)을 수정하여 준공도면 원도 전산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1.1.1.1.1. “GIS 측량성과(지하시설물도)”라 함은 배관 시공 완료 후 설계자가 시행한 기준점 측량성과(매설점)를 기준으로 GIS구축측량업체의 직접 측량을 통해 얻은 배관 매설위치 정보로서, 시행 완료 후 측량법에 의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성과심사를 득한 자료를 말한다.

1.1.1.1.1.1.1.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에는 준공도면 원도를 작성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와 더불어서 감독실명화(계약상대자와 가스공사 각각 각 장당 토목, 기계, 전기 감독의 확인 서명)한다. (오류 같음)**

1.1.1.1.1.2. 계약상대자는 일일작업일보 상에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 작업내용, 기타 특기사항과 함께 **준공도면 원도의 작성구간을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1.1.1.1. 기성의 지급

1.1.1.1.1. 계약상대자는 **기성고 신청 시에 기성구간에 대한 준공도면 원도 전산파일 및 출력본(A3)을 첨부해야 하며, 기성 사정 전에 발주자와 합동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사유지 침범 등을 확인해야 한다.**

1.1.1.1.2. **준공도면 원도가 기성서류에 첨부되지 않았거나 합동현장 실사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기성고 지급을 보류한다.**

1.1.1.1.1.1.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의 발주 전에 자재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해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 검사 및 시험규정”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타 사업소에서 기 공급원 승인받아 사용 중인 자재는 공급원 승인절차를 **자재사용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1.1. 사급자재관리

1.1.1.2.1.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자재사용 30일전에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급자재관리

발주자 직접구매 대상자재는 발주자가 구매하여 제공한다.

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작성한다.

1.1.1.1.1. 운전원 및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1 채움용 모래 중 갠모래(KS F 2324 규정의 SW, SP)는 다음의 규격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 4.75mm체 통과분 : 50% 이상
- * 0.075mm체 통과분 : 5% 이하
- * 최대치수 : 9.52mm
- * 산성도(pH) : 6~8
- * 염도(NaCl) : 0.04% 이하

2 채움용 모래의 골재원을 변경하거나 발주자가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3-2-1 모래 및 혼합골재” 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주배관의 채움용 재료로는 본 지방서의 “3-3-1 주배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하에 양질의 토사를 사용할 수 있다.